

원주역 우미 린 더스카이 |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**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: 공급세대수의 5% 범위)**

※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.

| 구분 | 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|------|------|--|----|----|----|---|-----|--|--|--|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|--|--|--|----|----|--|--|--|----|----|--|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|---|--|--|----|----|--|--|--|----|---|--|----------|---|--------|---|--|--|--|--------|---|---|----------|----|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|--|
| 신청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-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(태아, 입양자녀 포함)이 있는 분 -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,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·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당첨자 선정방법 | <p>■ 당첨자 선정 순서: ①지역 → ②배점 → ③미성년 자녀수 → ④청약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 → ⑤추첨</p> <p>■ ①지역: 해당지역 거주자(원주시 거주자) → 기타지역 거주자(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)</p> <p>■ ②배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배점항목</th> <th rowspan="2">총 배점</th> <th colspan="2">배점기준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기준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10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미성년 자녀수(1)</td> <td>40</td> <td>4명 이상</td> <td>40</td> <td>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3명</td> <td>35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2명</td> <td>25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영유아 자녀수(2)</td> <td>15</td> <td>3명 이상</td> <td>15</td> <td>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2명</td> <td>1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1명</td> <td>5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세대 구성(3)</td> <td>5</td> <td>3세대 이상</td> <td>5</td> <td>-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한부모 가족</td> <td>5</td> <td>- 청약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</td> </tr> <tr> <td>주택 기간(4)</td> <td>20</td> <td>10년 이상</td> <td>20</td> <td>- 배우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- 청약신청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</td> </tr> <tr> <td>해당 시·도 거주기간(5)</td> <td>15</td> <td>5년 이상~10년 미만</td> <td>15</td> <td>- 청약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</td> </tr> <tr> <td>입주자저축 가입기간(6)</td> <td>5</td> <td>1년 이상~5년 미만</td> <td>10</td> <td>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(1), (2)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</p> <p>(3)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</p> <p>(4), (5)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: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</p> | | | | 배점항목 | 총 배점 | 배점기준 | | 비고 | 기준 | 점수 | 계 | 100 | | | | 미성년 자녀수(1) | 40 | 4명 이상 | 40 |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| | | 3명 | 35 | | | | 2명 | 25 | | 영유아 자녀수(2) | 15 | 3명 이상 | 15 |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| | | 2명 | 10 | | | | 1명 | 5 | | 세대 구성(3) | 5 | 3세대 이상 | 5 | -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| | | 한부모 가족 | 5 | - 청약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| 주택 기간(4) | 20 | 10년 이상 | 20 | - 배우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- 청약신청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| 해당 시·도 거주기간(5) | 15 | 5년 이상~10년 미만 | 15 | - 청약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| 입주자저축 가입기간(6) | 5 | 1년 이상~5년 미만 | 10 |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|
| 배점항목 | 총 배점 | 배점기준 |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기준 | 점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계 | 1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미성년 자녀수(1) | 40 | 4명 이상 | 40 |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3명 | 3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2명 | 2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영유아 자녀수(2) | 15 | 3명 이상 | 15 |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2명 | 1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1명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세대 구성(3) | 5 | 3세대 이상 | 5 | -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한부모 가족 | 5 | - 청약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주택 기간(4) | 20 | 10년 이상 | 20 | - 배우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- 청약신청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해당 시·도 거주기간(5) | 15 | 5년 이상~10년 미만 | 15 | - 청약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입주자저축 가입기간(6) | 5 | 1년 이상~5년 미만 | 10 |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유의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의 경우 '임신진단서', 입양의 경우 '입양관계증명서'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. 자녀가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주택 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(23.11.10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」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